
복 지 급 여 과



목 차



I. 부서 기본현황	1
II. 2026년 목표와 추진방향	3
①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	4
② 취약계층 중심의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	8
③ 위기 속 희망, 긴급복지 신속 지원	10
④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	15
⑤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격관리 추진	16

I. 부서 기본현황

1 업무현황

☐ 인 력

구분	총계 [①+②]	공 무 원						정원 외	
		소계 [①]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②]	내 용
현원	27	25	1	4	7	10	3	2	· 공무원 2

☐ 주요업무

팀 명 (정원 내/외 인원)	주 요 업 무	비 고
생활보장팀 (7 / 1)	· 국민기초 생계, 교육, 해산·장제, 양곡 지원, 보장비용 징수 ·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 광주형(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서구형(기초생활보장) 추진 · 생계급여 및 차상위계층 확인대상 책정에 관한 사항 · 재해 및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	· 공무원 1
복지관리1팀 (6 / 0)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18개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수립 · 복지대상자 인적·소득·재산 등 변동 처리 업무 · 복지대상자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 관리 : 양동~상무2동, 금호2동	
복지관리2팀 (6 / 0)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18개 사업) · 복지대상자 인적·소득·재산 등 변동 처리 업무 · 복지대상자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 관리 : 화정1동~동천동	
복지조사팀 (6 / 1)	· 사회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 조사(27개 사업) · 사회복지서비스 결정 이의신청 상담 및 민원 처리 · 사회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공무원 1

2 기본현황

☐ 위원회 현황 : 1개(위원 15명)

위 원 회 명	설치목적	인원	임기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생 활 보 장 위 원 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5명 (당연직 4, 위촉직 11)	2년	55% 남자 : 5명 여자 : 6명

☐ 복지대상자 현황('25.11.30.기준, 구민의 23.39%) ※구민132,695세대, 275,521명

구분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초연금 등
세대	47,504	13,686	2,709	31,109
명	64,427	19,638	3,483	41,306

○ 국민기초수급자 현황(구민의 7.13%)

구분	계	일반·특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	13,686	13,664	22개 소
명	19,638	19,469	169

○ 차상위계층 현황(구민의 1.26%)

구분	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 확인대상자
세대	2,709	1,536	39	701	433
명	3,483	2,096	39	726	622

○ 한부모가족 및 기초연금 등 현황(구민의 15%)

구분	계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기타
세대	31,109	1,563	1,966	24,710	2,870
명	41,306	3,278	2,003	31,707 (구민의 11.51%)	4,318

※ 기타(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국가무형문화재 의료급여,
차상위자산형성, 초중고교육비, 광주형 기초보장, 광주 서구형 기초보장)

Ⅲ. 2026년 목표와 추진방향

부 서 목 표

더 촘촘하고 더 나은 생활보장제도 실현

전 략 과 제

세 부 사 업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

- ①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
- ③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취약계층
중심의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

- ① 「서구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
- ② 부정·부적정 수급자 관리

위기 속 희망,
긴급복지
신속지원

- ① 긴급복지 지원
- ②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사업 추진
- ③ 재난 이재민 발생 대비 재해구호업무 추진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

- 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통합조사 결정 의뢰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격 관리 추진

- ①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변동사항 관리 및 자료 정비

1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복지문턱을 낮춘 서구형 촘촘한 복지 등 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최저생활보장 실현

□ 역점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사업개요]

- 운영근거 :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등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근로무능력 가구로 기초수급자 및 광주형 탈락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선정 기준액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액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기준 중위소득의 25% (1구간 대상자)	641,060	1,049,823	1,339,759	1,623,685
기준 중위소득의 50% (2구간 대상자)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 지원내용 : 생계급여(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기간 : 1년 단위(1년간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세부계획]

-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매월 30일)

(단위 : 월/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410,270	671,880	857,440	1,039,150
2구간 대상자 지원액 **	205,130	335,940	428,720	519,57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 대상자 지원액 : 1구간 대상자의 1/2 수준

- 행복이음 데이터베이스 기반 예측 복지 실현
 - 주기적 전수조사로 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기초 등 상위 복지제도 연계의 징검다리 역할 수행
- 자가진단표* 제작 및 배부, 주민 접근성 강화
 - 각 동 민원대 부착 및 자생단체 홍보(회의 시, 밴드 및 단톡방 공유 요청)
 - * 소득기준, 근로능력유무, 타 제도 수급여부 등 확인
- 만족도 조사의 욕구 반영, 더 나은 복지서비스 매칭
 - 타 복지서비스 연계, 민간 후원을 활용한 복지욕구 충족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등
- 18개 동 찾아가는 복지틈새 제로 복지통장 및 자생단체 교육
 -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 연계하여 적극 발굴 추진

[소요예산] 100,000천원(구비)

세부사업명	통계목명	산출근거(부기)명	예산액(천원)	
			계	구비
		2026년 본예산	100,000	100,000
서구형기초생활보장지원 (구100)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서구형생계급여지원 (20명×411천원×12개월)	100,000	100,000

복지급여과장 윤순애(360-7020) | 생활보장팀장 문지연(360-7046) | 주무관 조연수(360-7048)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

[사업개요]

○ 각종 급여 지원 개요

급여종류	지급대상	지원기준	지급일	비고
생계급여 (국90% 시7% 구3%)	-생계급여 수급자 (월 9,150여 세대)	-지원액 : 가구별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보충급여 방식)	매월 20일	개인계좌 지급
해산·장제급여 (국90% 시7% 구3%)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해산비 : 1인 70만원 -장제비 : 1인 80만원	수시	4일 이내 지급
교육급여 (국90% 시7% 구3%) ※ 시 교육청 예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수급자 (2,059명)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연) (초등 502천원, 중등 699천원, 고등 860천원)	상반기(1월) 하반기(9월)	구비 부담액3% (40,933천원)를 市 교육청 지급

[세부계획]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매월)

- 15일(확정) : 신규 책정자 및 급여변동 예상자 사전 안내 및 지원액 확정
- 20일(지원) : 정기 생계급여 지원
- 30일(추가) : 추가 책정자 및 지급오류자 등 생계급여 추가 지원

○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수시)

○ 교육급여 지원 : 상반기(80%), 하반기(20%)

[소요예산] 73,410,324천원(국 66,032,453 시 5,135,857 구 2,242,014)

세부 사업명	통계목명	산출근거(부기)명	예산액(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2026년 본예산	73,410,324	66,032,453	5,135,857	2,242,014
생계급여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국90,시7,구3)	73,010,616	65,709,555	5,110,743	2,190,318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국90,시7,구3)	358,775	322,898	25,114	10,763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구100)	40,933			40,933

복지급여과장 윤순애(360-7020) | 생활보장팀장 문지연(360-7046) | 주무관 조연수, 최경원(360-7048)

□ 일반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기준에 제외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
- 선정기준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재 산	○ 일반재산 : 77,000천원 공제 ○ 금융재산 : 5,000천원 공제	○ 일반재산 : 1억 6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00천원 이하(초과하는 선정 제외)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소득(연 1.3억, 월 1,084만원), 재산(12억)의 경우에는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급 여	○ 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 급여 ○ 생계 : 차등지원(보충급여) - 4인 가구 : 2,078,316원	○ 종류 : 생계, 해산, 장제급여 ○ 생계 : 정액급여(기초생계급여의 50%) - 4인 가구 : 1,039,160원

※ 기초수급자, 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사업의 생계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세부계획]

- 광주형 생계급여 지원 및 자격 관리
 - 급여지원 : 매월 30일(1년 단위)
 - 재신청 도래자 관리 : 지원 기간(1년) 만료 예정 가구에 재신청 안내(수시)
-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자 발굴·홍보
 - 동 위기가구발굴단·통장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기초생활보장 및 광주형 기초보장급여 동시 신청 안내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제외자 대상 안내

[소요예산] 200,000천원(시비)

세부사업명	통계목명	산출근거(부기)명	예산액(천원)	
			계	시비
		2026년 본예산	200,000	200,000
광주형기초보장제도지원(시100)	사회보장적수혜금	광주형기초보장지원	200,000	200,000

복지급여과장 윤순애(360-7020) | 생활보장팀장 문지연(360-7046) | 주무관 이재성(350-4073)

2

취약계층 중심의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

서구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실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입장에서 적극 지원

□ 역점 「서구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

[사업개요]

○ 운영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위원구성 : 15명(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 임기 2년

[소위원회 구성(6명) - 신속한 심의를 위해 구성·운영]

○ 역할

-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부양 거부·기피 등 가족관계 해체로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보장받지 못하는 세대의 보장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세부계획]

○ 월 2회 이상 위원회 회의 개최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구제

○ 실제적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 적극 발굴 지원

[소요예산] 2,000천원(구비)

세부사업명	통계목명	산출근거(부기)명	예산액(천원)	
			계	구비
		2026년 본예산	2,000	2,000
복지대상자생활 지원업무추진 (구100)	사 무 관 리 비	생활보장위원회참석수당 (100천원×10명×2회)	2,000	2,000

복지급여과장 윤순애(360-7020) | 생활보장팀장 문지연(360-7046) | 주무관 조연수(360-7048)

□ 일반 부정·부적정 수급자 관리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2항
- 추진내용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확인조사 실시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등 행정절차 수행

[세부계획]

-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연계(보건복지부 신고포상금)
- 보장비용 징수 미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상계 처리, 중지자는 분납 환수 등
 - 징수대상자에 대한 전화 및 납부독촉 통지서 발송 지속 추진
 - 가구 여건상 납부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세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
- 부정수급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 안내문 발송
 - 구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등 홍보 강화

3

위기 속 희망, 긴급복지 신속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빠른 생활안정 도모

□ 역점 긴급복지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세대
 - ※ 위기사유 : 실직, 체납, 이혼, 출소, 가정폭력, 휴·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4,871,053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241,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6,000천원 + 가구별 공제금액
- 지급원칙 : 선지급 후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연장 및 지원 중단, 환수 결정
- 지원내용 (단위 : 원)

지원종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생 계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의 료	3,000,000 이내				
주 거	398,900 이내		662,500 이내		874,100 이내
교 육	초등 127,900 중등 180,000 고등 214,000 + 수업료·입학금				
기 타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동절기 연료비 15만원/월,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지원기간

지원종류	기본지원	연장지원	서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지원
생 계	3개월	-	추가 3개월
의 료	1회	-	추가 1회
주 거	1개월	추가 2개월	추가 9개월
교 육	1회(분기)	-	-
연 료	1개월	추가 2개월	추가 3개월

※ 단기 지원 원칙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세부계획]

○ 조사 결정 및 사후관리

- 선 지원 : 신청·접수 후 확인을 통해 72시간 이내 신속 지원
- 사후조사 : 선지원 후 1개월 이내 조사 완료
- 적정성 심사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서구생활보장위원회)
- 지원연장 : 위기상황 미해소 시 최대 12개월 이내 지원(지원 종류마다 상이)
- 연계지원 : 위기상황 지속 시 기초수급자, 노랑호루라기, 사례관리 등 연계

○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 전개(상시)

- 구 홈페이지, LED 옥외광고게시대, 현수막 등을 통한 상시 홍보
- 각종 홍보물(품) 제작·배부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 안내
- 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협력

[소요예산] 7,262,776천원(국 5,810,220 시 726,278 구 726,278)

세부사업명	통계목명	산출근거(부기)명	예산액(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2026년 본예산	7,262,776	5,810,220	726,278	726,278
긴급복지지원 (국80,시10,구10)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	7,262,776	5,810,220	726,278	726,278

복지급여과장 윤순애(360-7020) 생활보장팀장 문지연(360-7046) 주무관 신정은, 전경희(360-7630)

□ 일반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사업 추진

[추진개요]

-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기준 5,183,107원 이하)
 - 재산기준 : 261,000천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 금융재산 기준
 - 생계비 및 위기사례지원 : 8,000천원 이하
 - 주거비 지원 : 10,000천원 이하
- 지급원칙 : 선 지급 후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연장 및 지원 중단, 환수 결정
- 지원내용 (단위 : 원)

지원종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생 계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위기사례	2,000,000 이내				
주 거	398,900 이내		662,500 이내		874,100 이내

○ 지원기간

지원종류	기본지원	연장지원	서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지원
생 계	1개월	추가 2개월	추가 3개월 (근로무능력가구)
위기사례	연1회	-	-
주 거	1개월	추가 2개월	추가 3개월 (근로무능력가구)

[세부계획]

- 조사 결정 및 사후관리
 - 선 지원 : 신청·접수 후 확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
 - 사후조사 : 선지원 후 1개월 이내 조사 완료
 - 적정성 심사: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서구생활보장위원회)
 - 지원연장 : 위기상황 미해소 시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비용반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
- 연계지원 : 위기상황 지속 시 기초수급자, 사례관리 등 연계

○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 전개

- 구, 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및 자생단체 등을 통한 위기가구 집중 발굴
- 구 홈페이지, 서구 소식지, SNS 등을 통한 상시 홍보

[소요예산] 98,000천원(시비)

세부사업명	통계목명	산출근거(부기)명	예산액(천원)	
			계	시비
		2026년 본예산	98,000	98,000
복지사각지대 노랑후루라기지원 (시100)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광주형긴급복지 노랑후루라기지원	98,000	98,000

□ 일반 재난 이재민 발생 대비 재해구호업무 추진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재해구호법」
- 사업목적
 -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및 생활필수품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이재민 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
- 구호대상 :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일시대피자 등
-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계	학교	체육관	숙박시설
39	34	4	1

- 재해구호물자 비축 현황

계		모포(장)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기준	비축량	기준	비축량	기준	비축량	기준	비축량
806	1,828	695	1,712	85	78	26	38

[세부계획]

- 이재민 발생 대비 사전 점검
 - 임시주거시설 정기·수시 점검(냉·난방기 가동 상태 등)
 - 임시주거시설로 활용 가능한 경로당 및 민간숙박시설 사전 파악
 - 구호지원기관, 임시주거시설 등 비상연락망 현행화
- 재난 이재민 발생 시 적극 지원
 - 소규모 재난 : 인근 경로당 및 친인척 등 지인집으로 일시 대피 유도
 - 중규모 재난 : 민간숙박시설 대피 및 인근 식당 이용(市 재해구호기금)
 - 대규모 재난 : 학교 강당 등 지정된 임시주거시설 대피 및 운영 지원
 - 市 자연재난과, 각 洞,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의·협력 지원
 - 이재민에게 응급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품 지원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한 이재민 발생 현황 보고 등

복지급여과장 윤순애(360-7020) | 생활보장팀장 문지연(360-7046) | 주무관 박경자(360-7555)

4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 욕구를 적기에 충족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빈곤 완화 노력에 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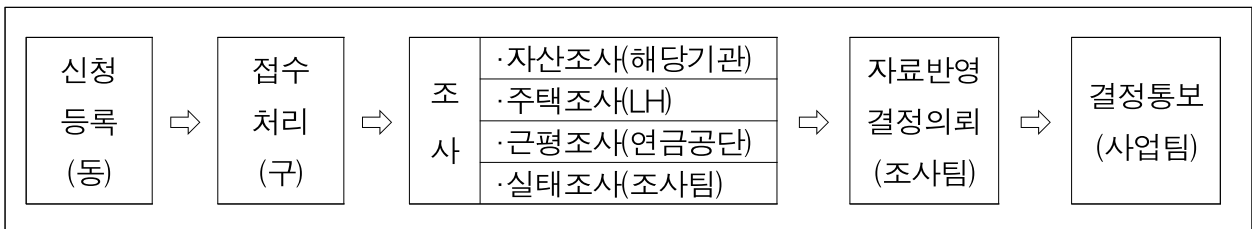
□ 일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통합조사 · 결정

[사업개요]

- 총 27개 사회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 통합조사 · 결정
- 가족관계 해체 등 실질적인 취약계층 구제에 총력
- 제외자의 타 복지제도 연계 등으로 위기 상황 해소 방안 다각적 모색
 - ※ 타 복지제도 : 긴급지원, 노랑호루라기사업, 광주형·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사례관리 등

[세부계획]

- 조사기간 : 30일 이내(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조사내용 : 신청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국세청 등 25개 기관 94유형) 등
- 이의신청 :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조사절차



2025년도 추진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접수 및 처리 현황

- 신규 신청접수 현황

(단위 : 건)

계	기 초 수급자	한부모 가 족	기 초 연금	차상위 계 층	임대 주택	기 타
18,687	7,140	465	4,178	3,063	473	3,368

※ 기타 : 장애인연금, 초중고교육비, 기존 주택매입, 기존주택전세, 청년월세, 청년내일저축, 광주형, 서구형

- 처리결과 : 책정 11,212건(60%), 제 외 7,475건(40%)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 구제 : 414건

○ 타 복지제도 연계: 36건

- 광주형기초 16건, 차상위 7건, 서구형기초 6건, 주거급여 4건, 긴급지원 3건

복지급여과장 윤순애(360-7020) | 복지조사팀장 이효숙(360-7113) | 주무관 김옥희(360-7756)

5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격 관리 추진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변동 예상 자료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소명을 통한 정확한 자료 반영으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

□ 일반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변동사항 관리 및 자료 정비

[사업개요]

- 18개 사업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등 변동사항 관리 및 권리 구제
-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인적 자료 등 변동사항을 적기 적용·관리하여 복지서비스의 적정성 구현
 - 행복e음 전산 오류 및 누락자료에 대한 자체 기획정비로 적정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함
- 복지대상자 관리 현황(구민의 23.39%) ('25. 11. 30. 기준)

계		기초수급자 (4개)		차상위계층 (4개)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기타 (7개)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47,504	64,427	13,686	19,638	2,709	3,483	1,563	3,278	1,966	2,003	24,710	31,707	2,870	4,318

※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 기타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국가무형문화재 의료급여, 차상위자산형성, 초중고교육비, 광주형 기초보장, 광주서구형 기초보장

[세부계획]

요 목	수시조사	확인조사
시 기	매일	월별(1·3분기) 및 정기(2·4분기)
조사내용	· 인적변동, 전·출입, 근로능력 · 신고 소득·재산, 주택조사 등	· 소득·재산 변동사항 · 부양의무자 조사 등
비 고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실질적 빈곤에 적극 대처 · 소득·재산 신고 지연 및 은닉 등 부정수급자 수시 조사 실시	

복지급여과장 윤순애(360-7020) | 복지관리2팀장 윤미라,김선주(360-7107) | 주무관 조영은 외9인(360-7116)